

제1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(제2차 본회의)

2013. 6. 25.(화) 13:30~

의안 심사 보고서

산업건설위원회

【목 차】

1. 거창사과·딸기산업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의 건 2

〔 거창사과딸기산업특구 지정신청 의견청취의 건 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. 6. 12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6. 13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6. 25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거창사과·딸기는 거창군 농업소득의 32.9%, 10.34%를 각각 차지할 만큼 지역의 중요한 소득원이며, 사과·딸기 주산단지로서 우수한 재배 환경 및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,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, 거창사과테마파크, 경남사과이용연구소, 딸기체험농장 등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FTA발효 후 수입과일의 증가,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민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저하 등 농업에 새로운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
- 거창사과·딸기산업특구를 지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적용 및 특화사업추진을 통하여 이러한 현실을 개선 발전하여 거창사과·딸기 명품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.
- 이러한 취지로 특구지정 계획(안)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『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』 제5조 제1항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.

나. 주요내용

- (1) 특구의 명칭 : 거창 사과 · 딸기 산업 특구
- (2) 특구의 위치 :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9번지의 외 8,014필지
- (3) 특구의 면적 : 15,778,213m²(1,577.82 ha)
- (4) 특구지정의 필요성
 - 특구지정을 통해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업중심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통해 경상남도의 권역별 발전전략을 충실히 수행하여 경남 서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수행
 - 특구지정을 통해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복합산업화 추진이라는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함으로써 FTA를 적극 대응하여 지역농업을 보호하고 거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
- (5) 특화사업계획
 - 고품질 생산체계구축 (고품질생산단지확충 등 7개 사업)
 - 가공분야활성화 (사과생과일주스 연구. 생산지원 등 2개 사업)
 - 유통기반구축 (산지유통센터운영 등 3개 사업)
 - 명품브랜드 육성 (사과이용연구소운영 등 7개 사업)
 - 명소 마케팅추진 (거창사과테마파크 운영 등 5개 사업)
- (6) 특화사업자 : 거창군수
- (7) 특구 토지이용계획 : 해당없음
- (8)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
 -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(규제특례법 제22조)
 - 거창스포츠파크 및 사화마라톤대회코스 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찰서장에게 도로의 차량통행을 금지·제한 조치 요청
 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(규제특례법 제23조)

- 특구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광고물의 설치기준, 종류, 모양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

○ 농지법에 관한 특례 (규제특례법 제26조)

- 사과, 딸기 재배시 농지의 임대 및 사용대를 할 수 있는 특례인정

○ 도로법에 관한 특례 (규제특례법 제33조)

- 특구지역내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점용을 일시적으로 허용

○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(규제특례법 제36조의 5)

- 거창 사과·딸기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우선 심사

○ 특허법에 관한 특례 (규제특례법 제36조의 8)

- 가공식품 등 사과와 관련된 특허신청에 대한 우선 심사

○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(규제특례법 제43조)

- 사과·딸기를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시 식품의 표시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음

(9) 재원조달방법

○ 총사업비 : 51,841백만원

○ 조달방법 : 국비 4,709(9.08%), 도비 8,806(16.99%),
군비 28,846(55.64%), 민자 9,480(18.29%)

(10)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화 방안 : 해당 없음

(11)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: 2013 ~ 2017년(5년간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거창사과·딸기산업 특구지정 계획안은 지리적여건(큰 일교차, 물의 발원지 등)과 거점APC, 사과이용연구소, 사과테마파크, 딸기체험 마을 등 우수한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, 최근 지구온난화에

따른 이상기후발생, 농민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저하, FTA에 따른 수입과일의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에 따라

나. 그 동안 축적된 기반시설과 생산기술 노하우 등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1-2-3차 산업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등 사과·딸기 부가가치 즉 브랜드 가치 향상 전략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거창사과·딸기 산업 특구를 지정하려는 것으로서

다. 이와 관련 공청회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렴하고,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 외에 타 특구와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채택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